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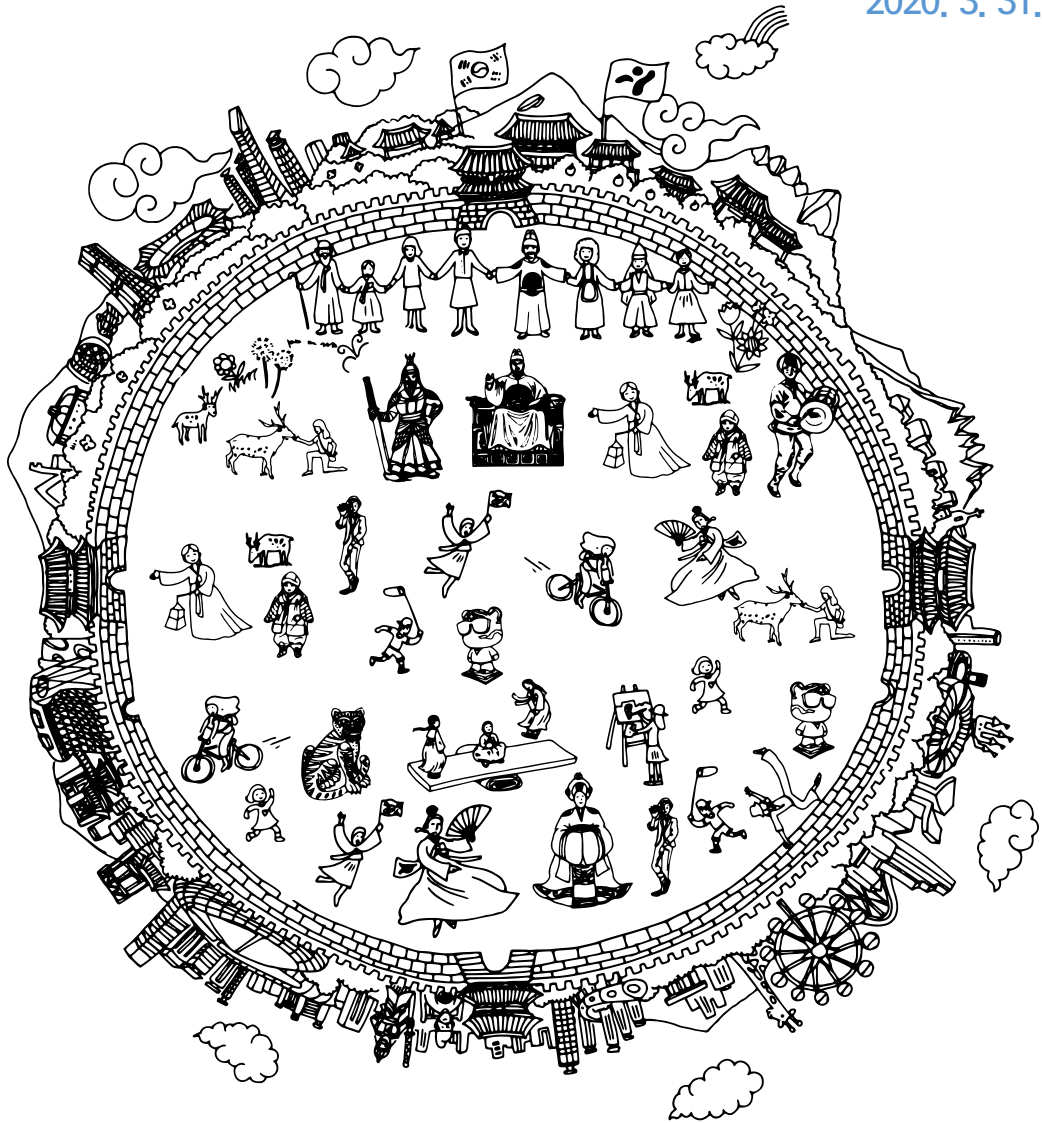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575호

2020. 3. 31.(화)



목 차

◆ 자치법규

[조 례]

제7547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제7548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정정

제2020-3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정정 공고(동대문구)	7
------------	--	---

자치법규

[조 례]

◆ 서울특별시조례 제7547호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20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해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급권자
 2. 차상위계층
 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4. 기타 지원이 긴급한 생활안정을 필요로 하는 자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 한 때

제5조(생활안정지원의 내용) 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지원이 되는 사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급식관련경비 지원
 2. 교육관련 경비 지원
 3. 문화체육활동경비 지원
 4. 명절보상품 지원
 5. 월동대책비 지원
 6. 긴급구호비 지원
 7. 재난발생시 생활비의 지원
 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 제5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선정한 사람으로 결정한다.

- ②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 ③ 제5조제1항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이 결정한 사람과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
- ④ 제5조제1항제6호의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에게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
- ⑤ 제5조제1항제7호의 지원은 가구주 또는 가구원의 신청에 의하여 가구단위로 지급하며 급여의 지급조건은 제5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⑥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의 방법) ①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을 통해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에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호계정의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서 정하는 용도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에 필요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및 「서울특별시 서울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 등의 지원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코로나19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감염병·화재·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에게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이 가능하게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직접 피해계층에 대한 촘촘한 지원으로 민생안정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권자가 아니거나 긴급복지지원제도의 대상자가 아닌 경우에도 재난 상황에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제2조 및 제4조제2항)
- 나.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시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상황에 따라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함(제3조)
- 다.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제도를 운영하여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7조)
- 라. 조례의 제명을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밖에 현재 운영하지 않는 희망온돌 시민기획위원회와 관련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정비함(안 제명 등)

◆ 서울특별시조례 제7548호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인

2020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사업장, 공사장의 조업단축 및” 을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건설공사장의” 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폐쇄” 를 “폐쇄 또는 이용제한” 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집중관리 등) ① 시장은 특별법 제2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5조제1항제1호·제2호·제4호·제5호 및 제6호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지역 내 관련 기관, 사업장, 공사장 및 주민 등에게 신문·방송,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의 제목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지역)” 을 “(운행제한 대상지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5조에 따른 비상저감조치” 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공해차량” 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 을 “(운행제한 대상차량)”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5조제1항1호의” 를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를 “(운행제한 기간 및 절차)”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운행제한” 을 “제5조에 따른 운행제한” 으로, “특별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비상저감조치의 대상지역, 발령의 기준·기간·절차 등을 준용한다” 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다” 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시행하며, 시행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운행제한” 을 “제7조에 따른 운행제한” 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운행제한” 을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에 따른 운행제한을 동시에 위반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제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2조제2항 중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을 “시행령” 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대상) ①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자동차등록원부상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이외 지역의 등록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동차 중 「지방세법」 제1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2조제1항에 따른 영업용 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4. 시장이 정한 방법·절차 등에 따라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서 정한 저공해 조치를 신청한 자동차
- ② 「대기환경보전법」 제60조에 따른 배출가스 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인증·보급되었으나 장착이 불가한 자동차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제5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

1. 개정이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월평균 농도가 특히 심화되는 1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상시 운행제한 등 배출원 관리를 보다 집중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근거를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의 종류를 명확히 규정함(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
- 나.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의 기간, 내용, 종류, 절차 등을 규정함(제5조의2 신설)
- 다.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 집중관리 기간 중 상시 운행제한의 대상, 시행시간, 단속방법, 과태료 부과 등을 규정함(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 라. 운행제한 한시적 단속제외 대상 및 기간을 설정함(부칙 제2조)

정 정

◆ 동대문구공고 제2020-350호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정정 공고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공고 제2020-318호(2020.03.26.)로 공고된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 내용 중 사업명 오기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공고 합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1978-274호(1978.06.12.)로 도시계획시설(도로) 최초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9호(2011.01.13.)로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하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의견 청취 공고를 합니다.
4. 건물,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 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0년 3월 31일
동 대 문 구 청 장

가. 사업 시행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276-7

나.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다. 사업명(변경)

- 기정 : 사가정로 4길(답십리동 276-7) 도로확장
- 변경 : 전농로 4길(답십리동 276-7) 도로확장

라.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폭 10m→20m, 연장 20m

마.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용두동)

바. 사업착공 및 준공년월일 : 인가일로부터 2년

사.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관리자의 성명·주소 : 별첨

아. 열람장소 : 동대문구청 도로과

자. 열람기간 : 공고(시보게재)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차. 관계도서는 동대문구청 도로과(☎2127-4814)에 비치하여 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열람하고 있으며,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서를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동대문구청 도로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상세한 사항은 동대문구청 도로과(☎2127-48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전농로 4길(전농동276-7) 도로확장]

연번	소재지		지목	지적 (㎡)	편입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 번				성 명	주 소	지분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답십리동	276-7	대	24	24	김용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304동 601호(답십리동, 래미안위브)					
2	답십리동	276-10	대	23	23	김용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304동 601호(답십리동, 래미안위브)					
3	답십리동	276-28	대	16	16	김용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304동 601호(답십리동, 래미안위브)					
4	답십리동	276-29	대	3	3	김용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304동 601호(답십리동, 래미안위브)					
5	답십리동	276-1	도로	301	135	서울특별시						
6	답십리동	446-25	도로	1520	102	국 (국토교통부)						
7	답십리동	439-97	도로	4728	87	국 (재무부)						

물 건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전농로 4길(전농동276-7) 도로확장]

연번	소재지		물건의 종 류	규격및 구조	면적 (㎡)	소 유 자		이해관계인			비 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 관계	
1	답십리동	276-7, 276-10	건물 (1층)	시멘조	37	김용석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130, 304동 601호(답십리동, 래미안위브)				
			건물 (2층)	시멘조	37						
			단층건물		18						
			화장실		1						
			창고		3						
2	답십리동	276-1	가시설물	비닐 하우스	60	한순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답십리동 944 답십리한화아파트 201동 1907호				
			담장 및 대문		1식						

영 업 권 조 서

-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전농로 4길(전농동276-7) 도로확장]

연번	소재지		상호명	업종	소 유 자		비 고
	동	지번			성 명	주 소	
1	답십리동	276-7, 276-10	부동산나라공인중개사사무소	부동산	김애숙	답십리동 276-7	
2	답십리동	276-1	답십리 꽃 식물원	소매업	한순순	답십리동 276-1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